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 사업관리 운영지침

2026. 3. 31. 제정

2026. 8. 24. 개정

1. 관리운영지침의 목적

이 관리운영지침(이하 '지침'이라 한다)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전문기관)이 「첨단분야 인턴십 지원사업(이하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및 기업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 사업비의 편성·집행·관리 및 정산 등에 대해 세부적인 기준과 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 ① 전문기관 : 교육부의 인턴십 사업 추진을 위하여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으로, 한국산업기술진흥원(KIAT)을 지칭한다.
- ② 참여대학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및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 수행대학으로, 인턴십 사업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참여학생을 연계하며, 사업 운영 과정에서 참여학생에 대한 관리의무를 가지는 대학을 말한다.
- ③ 참여기업 : 참여학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인턴십 사업에 참여하는 첨단분야 기업으로서, 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참여기관을 말한다.
- ④ 참여학생 :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사업 및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이하 '모사업'이라 한다) 교육과정을 이수하였거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학생 또는 모사업 참여가 확정되어 참여할 예정인 학생(이하 '참여예정자'라 한다)으로 인턴십 사업에 따라 참여대학의 인턴십 연계 과목을 수강하며 참여기업에서 인턴십을 수행하는 학생을 말한다.

- ⑤ 사업관리위원회 :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하 ‘규정’) 제9조에 따라, 인턴십 사업의 선정 결과, 사업비 배분 등 사업 관련 중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위원회를 말한다.
- ⑥ 협의체 : 인턴십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참여대학과 참여기업이 공동으로 구성하는 협의 기구로서, 인턴십 운영계획 수립, 참여학생 선발·관리, 인턴십 운영, 성과 관리 등 사업 수행 전반에 관한 사항을 공동으로 협의·조정하기 위한 조직을 말한다.

3. 위원회의 운영

3-1. 사업관리위원회

- ① 전문기관은 인턴십 사업 운영을 위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사업관리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야 한다.
- ② 사업관리위원회는 10인 내외의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한다. 전문기관의 장은 당연직 위원(교육부 담당 국장, 전문기관 본부장)을 포함하여 추천 및 임명한다.
- ③ 사업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 1. 인턴십 사업 참여대학 선정에 대한 심의·의결
 - 2. 인턴십 사업 평가에 대한 심의·의결
 - 3. 사업비 환수 및 제재에 관한 사항
 - 4.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주요 결정 사항
- ④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위원의 부득이한 사정에 의하여 변경해야 할 경우 전문기관에서 위촉한 자로 변경하되, 교육부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은 해당 직위에 있는 자가 당연 승계한다.
- ⑤ 사업관리위원회는 위원장과 협의하여 전문기관의 장이 소집하며, 재직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불가피한 사정으로 회의 소집이 어렵거나 불가능할 경우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 ⑥ 전문기관의 장은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사전 협의하고, 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3-2. 조정위원회

- ① 전문기관은 중대한 협약 변경(사업 실적 달성 관련 등), 사업 해약 사유 발생에 따른 사전 검토가 필요할 경우 조정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할 수 있다.
- ② 조정위원회는 사업 이해도가 높은 산학연 전문가 5인 내외로 구성하여 운영한다.

4. 사업 구성 및 추진 단계

4-1. 사업 구성

- ① 본 사업은 다음 각 호의 단계로 구성한다.
 1. 사업 계획 수립 및 공고
 2.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 모집·선정
 3. 참여학생 모집·선발 및 매칭
 4. 인턴십 운영
 5. 참여대학의 결과보고 및 사후관리
- ② 구체적인 연간 일정과 세부 운영방식은 매 회차 사업 공고 및 세부 추진계획에서 정한다.

4-2. 사업 수행 주체의 역할

- ①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세부추진계획 수립, 예산 편성·집행·정산
 2.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 협약 체결
 3. 사업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4. 부정수급 적발 시 환수 조치

5. 결과평가 및 사후관리

- ② 참여대학은 참여기업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인턴십 사업 운영계획 수립 및 학내 제도 개선
 - 2. 인턴십 연계 교과목 개설, 교육과정 편성 및 학점인정 운영
 - 3. 참여기업 발굴·평가 및 협약 체결
 - 4. 참여학생 모집·선발, 사전교육 및 안전교육 실시
 - 5. 참여학생 인턴십 모니터링 및 성적 평가
 - 6. 결과보고서 제출
- ③ 참여기업은 참여대학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참여학생 근무시간 관리, 직무지도 및 성과평가
 - 2. 안전보건, 직장 내 괴롭힘·성희롱 예방 등 참여학생 보호조치 이행
 - 3. 인턴십 운영계획 등 전문기관·참여대학이 요구하는 서류 제출
 - 4. 협약 조건 준수 및 사업비 집행 조건 이행

5. 인턴십 사업 참여대상 선정

- ① 인턴십 사업의 지원대상은 모사업 참여학생(참여예정자를 포함한다)으로 한다.
- ② 대학은 인턴십 사업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학생을 연계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며, 선정평가 기준에는 다음 각 호를 포함한다.
 - 1. 인턴십 운영역량
 - 2. 교육과정 운영 계획
 - 3. 안전관리 방안
 - 4. 취업·진로 지원 계획

- ③ 선정 절차 및 평가 방법은 전문기관이 수립한 평가 기준에 따르며,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해야 한다.
- ④ 대학이 제출한 사업계획서 등 평가 관련 서류에 허위의 내용이 기재되었거나,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 ⑤ 참여예정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모사업 참여 협약서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를 참여대학에 제출하여야 하며, 참여대학은 이를 보관·관리하고 전문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⑥ 전문기관 및 참여대학은 제5항의 협약서 등을 근거로 참여예정자의 지원 적격성을 사후 확인·검증할 수 있다.

6. 협약 체결 및 해약

6-1. 협약의 체결

- ① 인턴십 사업 수행을 위한 협약은 전문기관, 참여대학 및 기업 풀에 속한 참여기업 간 협약의 형태로 체결한다.
- ② 제1항의 협약은 특정 학생의 실습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며, 기업 풀 내 기업의 교체는 협의체 구성의 변경으로 보지 아니한다.
- ③ 협약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 1. 협약 당사자(전문기관, 참여대학, 기업 풀에 속한 참여기업)
 - 2.~6. (현행과 같음)
- ④ 제1항의 협약은 참여학생의 인턴십 시작 전까지 체결하여야 하며, 참여대학·참여기업·참여학생 간 제3자 협약은 인턴십 시작 전까지 체결하고 그 협약서를 전문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⑤ 제5항의 경우 제3자 협약은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4조제1항에 따른 협약으로 보며, 같은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협약서)의 필수 요소를 포함하여야 한다.

6-2. 협약의 해약

- ① 전문기관은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이 다음 각 호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협약체결에 따른 주요 협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2. 인턴십 운영계획서 또는 제출한 서류가 허위로 확인된 경우
 3. 불법·부정한 방법에 기반하여 실적을 제출하는 경우
 4. 사업비의 유용·횡령 등 중대한 법령 위반이 있는 경우
 5.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제18조에 따른 학생 보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 ② 참여대학 또는 참여기업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약되는 경우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에 대하여 향후 인턴십 사업 및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유사 재정지원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제재의 기간 및 수준은 귀책 정도, 위반의 고의·중과실 여부, 학생 피해 규모, 재발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문기관이 결정한다.
- ③ 전문기관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해약할 경우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에 그 사실을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고, 사전 통보에 이의가 있는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은 사전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문기관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다.
- ④ 전문기관은 제3항에 의한 참여대학 및 참여기업의 이의제기 현황 및 그 처리 결과를 교육부에 보고하여야 하며, 교육부 또는 전문기관은 해당 기관에 최종 확정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협약 해약 사전 통보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제3항에 따른 사전 통보로 최종 확정 통보를 갈음할 수 있다.

6-3. 참여기업의 변경

- ① 기업 풀 내 참여기업 변경은 경미한 변경으로 보아 참여대학이 전문기관에 통보함으로써 처리한다. 이 경우 변경되는 기업은 사전에 기업 풀에 포함되어 참여기업 자격심사를 완료한 기업이어야 한다.

- ② 참여기업 풀 관련 중대한 변경은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제19조제4항에 따른 승인 절차에 따른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참여기업이 변경된 경우 참여대학은 변경된 참여기업과 지체 없이 협약을 체결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7. 성과지표 및 성과 관리

- ① 성과지표는 참여대학이 공통으로 설정·관리해야 하는 ‘핵심 성과지표’와 대학별 계획에 따라 설정·관리하는 ‘자율 성과지표’로 구분한다.
- ② 참여대학은 정기적인 현장 점검을 통해 성과 점검을 진행한다.
- ③ 사업 기간 종료 후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및 첨단산업 특성화 대학 재정지원 사업의 성과평가와 연계하여 대학별 실적보고서를 평가할 수 있다.

8. 사업비 집행

- ① 사업비 관리 회계연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하되, 교육부는 필요시 해당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사업비는 4주 기준, 주 5일 실습을 원칙으로 산정하며, 확정된 사업비는 참여기업의 지급 요청에 따라 전문기관이 참여기업에 지급한다.
- ③ 참여기업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별도 통장 및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하고, 참여학생 급여 이외에도 전담인력확보 및 멘토링 운영 등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범위 내에서는 사업비를 집행할 수 있다.
- ④ 참여학생의 중도 포기 등으로 인턴십이 예정된 기간 이전에 종료되는 경우, 참여기업은 실제 수행된 인턴십 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급액을 전문기관에 요청하여야 한다.
- ⑤ 참여대학은 첨단산업 인재양성 부트캠프 또는 첨단산업 특성화대학 재정지원 사업비를 활용하여 인턴십 사업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이 가능하다.

9. 기타 행정 사항

- ① 본 지침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교육부 기본계획」 및 「첨단 산업 인재양성 사업(특성화대학, 부트캠프) 사업관리 운영 지침」을 따른다.
- ② 본 지침의 해석상 발생하는 문제는 교육부의 결정 및 해석에 따른다.

부칙(신설)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26년 8월 2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5조 및 제6조의 개정규정은 이 지침 시행 전 공고(3차 공고를 포함한다)에 따라 모집·선정 절차가 진행 중인 참여예정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별지 제1호

학생 참여 협약서(양식)

참여협약서

대학명	대학명 기재					
인턴십 기업명	인턴십 참여 예정 기업명 기재					
참여 예정 사업명	첨단산업인재양성부트캠프사업, 첨단산업특성화대학재정지원사업					
학생 정보	성명	성별	생년월일	인턴십 참여 기간	첨단분야 인재양성사업 참여 예정일	소속학과
	홍길동	남	'04. 01. 01.	'26.09.01.~ '26.00.00.	'27.03.02 ('27-1 학기)	전자공학과

※ 학생의 참여 협약 취소 허용 범위

- 자퇴, 제적 등의 사유로 학적 변동이 일어난 경우 등
- * 휴학으로 인한 첨단분야인재양성사업 참여 예정일 변동 발생 시, 휴학 기간만큼 참여 예정일을 조정할 수 있음
- 인턴십 예정기업의 휴·폐업, 경영상 사유 등으로 인한 인턴십 취소가 발생한 경우 등
- 대체 기업이 없어 인턴십 과정 이수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 등

본 학생 000은 첨단분야인턴십지원사업 참여에 동의합니다.

또한, 대학 재정지원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반 사항을 준수하면서 첨단분야인턴십지원사업에 성실히 임하며, 향후 상기 내용과 같이 첨단분야인재양성사업에 참여할 것을 협약합니다.

20 년 월 일

(인)

00대학교 총장 귀하

별지 제2호(안)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양식)**대학 재정지원 사업(교육수혜자)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소속대학	성명	학번	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생년월일·성별)	개인정보 이용·제공 및 청렴 동의 (자필서명 必)
(예시) 00000	000		000-0000-0000	000000-0*****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

교육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수집기관")은 대학 재정지원사업의 운영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합니다.

- 수집·이용 목적: 첨단산업 분야 대학 재정지원사업 참여 관리 및 성과관리(참여 학생의 교육 정보 및 취업 현황DB 구축·관리)
- 수집·이용 항목: 이름, 생년월일, 성별, 휴대전화번호, 이메일, 소속대학, 전공, 학위, 학과, 학번, 연구분야, 교육이수 사항(이수학점, 교과목, 교육프로그램 등), 입학연월, 졸업연월, 수혜대상 정부사업, 수혜 해당연도, 수혜기간, 취업사항(직장명, 직위, 직장분류, 근무형태, 근무지역, 취업연월, 퇴사연월)
- 보유·이용 기간: 인턴십 사업 종료 후 5년
- 위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첨단분야인턴십지원사업 참여 및 관련 서비스 이용에 제한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동의 여부: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